

남북한 사회통합의 통합: 권리중심적 접근*

이 동 진**

I. 문제제기	V. 사회보장
II. 권리중심적 사회통합이론	VI. 가족
III. 소유	VII. 결론
IV. 고용	

I. 문제제기

남북한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와 같은 체계수준에서의 통합과 아울러 사회수준에서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특히 남북 정상간에 합의한 ‘낮은 수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남북한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통합에 이르려는 것이라고 하면,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은 정치·군사와 경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해 남북한간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¹⁾

사회학에서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의 구분은 록우드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²⁾

* 이 연구는 2000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박사후 연수과정 과제로 수행된 것임(KRF-2000-037-CA0062)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회학
 1) 참고문헌의 관련연구 목록을 참조할 것.
 2) David Lockwood,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G. K. Zilleschan and W. Hirsh(eds.), *Explorations in Social Change* (London: Routledge, 1964).

록우드는 제도와 제도간 공약성 또는 공약불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에 대해 행위자와 행위자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를 구분하고, 각각을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이라고 불렀다.³⁾ 행위자연구는 행위자의 집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두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곧 하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집합으로서의 집단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공통된 속성을 가진 집합으로서의 범주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이론도 집단으로서의 사회통합이론과 범주로서의 사회통합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⁴⁾ 이 글에서는 범주로서의 사회통합 이론에 속하는 마샬의 시민권 이론을 재구성해,⁵⁾ 남북한 각 사회가 어떻게 권리를 배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고 있는가를 비교하고, 이로부터 남북한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탐색해보려고 한다.

마샬은 시민권을 시민적 시민권(자유권), 정치적 시민권(참정권), 사회적 시민권(사회권)으로 구분하고, 이를 진화론적으로 설명했다. 남북한이 시민권의 배분이 다른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이 남한에 비해 자유권과 참정권이 미약하다는 점을 쉽게 지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참정권을 제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남북한이 어떻게 다르게 배분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참정권은 다른 두 시민권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 다른 두 시민권이 각각 국가로부터의 권리(소극적 권리), 국가로의 권리(적극적 권리)라고 하면, 참정권은 국가를 (재)구성하는 권리, 결과의 권리가 아니라 과정의 권리, 다른 두 권리를 배분하는 권리이다.⁶⁾ 둘째, 이 글에서는 시민권 가운데서도 생활

3) Nicos Mouzelis, "Social and system integration: Harbermas's view,"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3-2(1992), p. 285.

4) 집단으로서의 사회통합이론으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J. Har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London: Polity Press, 1987); A. Giddens,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Cambridge: Polity Press, 1988).

5) T. H. Marshall,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Anchor Press, 1964).

6) 참정권이 없다면 인민은 권리의 수혜자는 된다고 해도 권리의 창설자는 되지 못한다. 완전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해야 한다. 마샬이 영국의 예를 통해 제시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으로의 시민권의 진화론적 설명은 자유권 없이 참정권 없고, 참정권 없이 사회권이 없다고 하는 의미로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자유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권을 확충했지만 자유권의 지나친 축소는 참정권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시민권간의 통합이 필요하

자료의 취득권리에 초점을 맞출 것인데, 참정권은 이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생활자료의 취득권리는 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어떤 권리를 중심으로 생존하는가는 각 사회마다 다르고, 이러한 생존권의 배분방식은 곧 사회통합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착안해 이 글에서는 남북한 각 사회가 어떻게 권리를 배분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남북한 각 사회의 사회통합에서의 장점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남북한간 사회통합을 이루는 방안, 곧 남북한 각 사회의 사회통합의 통합으로서의 남북한간 사회통합을 이루는 방안을 찾아 볼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제2 장에서는 시민적 시민권과 사회적 시민권을 생활자료를 취득하는 네 가지 권리로 분해해 남북한의 사회통합 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시할 것이다.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에서는 남북한 각각의 사회에서 이러한 네 가지 권리가 각각 어떻게 보장되는가를, 법률상의 권리와 실제적인 권리로 구분해 살펴볼 것이다. 법률상의 권리에 대해서는 다시 헌법상의 권리로서의 기본권과 개별적인 법률상의 권리로서의 구체적인 권리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실제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권리의 유무에 따른 계층화(권리계급)라는 틀로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남북한 각각의 사회통합을 평가하고, 이로부터 각 사회통합의 장점을 통합하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II. 권리중심적 사회통합이론

1. 마샬의 시민권이론

마샬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 시민권이 확대되어 왔음을 다음과 같

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7) 남한헌법(1989)과 북한헌법(1998)의 기본권조항을 비교하고, 개별적인 법률로서는 소유권은 민법(물권법), 가족권은 가족법, 노동권은 노동법, 사회보장권은 사회보장법률을 각각 비교할 것이다. 남한의 관련법률은 민법(1989)의 물권편(민법)과 친족·상속편(가족법), 근로기준법(1999) 등 노동관계법,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 사회보장관계법이 있고 북한은 민법(1990)과 가족법(1990), 노동법(1978), 사회보험법(1946)·사회보장법(1953) 등이 있다. 본문에서 각 법률을 인용하면서 연도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이 설명했다. “시민적 요소는 개인적 자유에 필수적인 권리들인 인격의 자유, 언론·사상·종교의 자유, 재산을 소유하고 타당한 계약을 체결하는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로 구성된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과의 평등이라는 견지에서,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모든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는 권리인 점에서 나머지 권리와 다르다. 이것은 공민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도들이 법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적 요소는 정치적 권위를 지닌 조직체의 성원으로서는 또는 그러한 조직체의 성원의 투표인으로서 정치적 권력의 행사에 참가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상응하는 제도는 국회와 지방의회이다. 사회적 요소는 약간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에서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고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수준에 따른 문화적 생활을 누리는 권리까지의 전체 범위를 의미한다. 그것과 가장 밀접히 연결된 제도는 교육체제와 사회서비스이다.”⁸⁾

마샬의 시민권이론은 왜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민권은 한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인 사람에게 부여된 지위(성원권)로서 그 지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 지위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점에서 평등하다.⁹⁾ 따라서 시민권은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제적 수준에서 구별되는 불평등과는 모순적이다.¹⁰⁾ 메인이 근대화를 신분사회에서 계약사회로의 변화로 정식화한 것은 봉건사회에서는 계약이 없었기 때문이거나 근대사회에서는 신분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다. 근대적 계약은 본질적으로 신분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봉건사회에서의 계약과는 다르다. 근대사회에서는 그 위에서 불평등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계급, 직능, 가족과 관련되는 상이한 신분이 평등의 기초를 제공한 시민권이라는 단일의 신분에 의해 대체되었다.¹¹⁾ 따라서 시민권의 평등이 승인된다면 사회계급체계의 불평등은 받아 들일만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점에서 사회계급과의 관계에서 20세기에 와서야 발전한 사회적 시민권이 중요하다. 사회적 시민권은 신분에 의한 계약의 침해 사회적 정의에 대한 시장가격의 종속을 함의하는 것이다.¹²⁾

8) T. H. Marshall, *op.cit.*, pp. 78~79.

9) *ibid.*, p. 92.

10) *ibid.*, p. 76.

11) *ibid.*, p. 96.

12) *ibid.*, p. 122.

사회계급과 시민권은 상반되는 원칙을 따르므로,¹³⁾ 시민권이론은 곧 계급갈등이 아니라 계급타협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의 계급이론이 될 수 있고 또한 사회통합이론이 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맑스에 의하면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하는 자가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자본주의시기에는 무산자는 곧 무권리자였다. 자유권은 무산자에게 실제적인 의의를 거의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무산자를 권리공동체 바깥에 두고서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노동자는 참정권과 사회적 시민권을 누리게 되었다.

2. 현대의 기본권 또는 인권 이론

사회적 시민권이 확대되면 계급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 노동자는 계급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가 쉽게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¹⁴⁾ 마샬이 사회계급과 상반된다고 하는 시민권은 사회적 시민권을 지칭한다. 시민적 시민권과 사회적 시민권의 구분은 헌법학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또는 생활권적) 기본권으로, 인권이론에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두 권리를 구분하는 것은 곧 양자가 상반되는 원칙에 따르기 때문이다.

자유권과 사회권의 구분은 헌법학뿐만 아니라 민법학에서도 확인된다. 다시 말하면 기본권 또는 인권과 같은 주관적 공권뿐만 아니라 재산권과 같은 사권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산권 가운데서 중심을 이루는 소유권의 연혁에 대해 살펴보자. 자유권으로서의 소유권은 1989년의 프랑스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유일하게 신성불가침한 권리로서 선언되었다.¹⁵⁾ 그리고 이와 관련해 근대민법에서는 소유권절대의 원칙을 채택했다. 그런데 1918년 소비에트러시아 인권선

13) *ibid.*, p. 92.

14) 마샬은 사회적 시민권과 시장가격 사이의 근본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ibid.*, p. 125.

15) “신성불가침의 권리인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에 따라 사전에 정당한 보상조건 아래 그것을 명백히 요구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박탈당하지 않는다(제17조).”

언(‘근로하고 착취당하는 인민의 권리선언’)에서는 사적 소유권을 철폐하고,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했다.¹⁶⁾ 이와 관련해 현대민법에서는 소유권절대 원칙을 수정했다.

소비에트러시아 인권선언에서는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신해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권리가 기본권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었다.¹⁷⁾ 그런데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는 다시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제7조)”라고 해 사유재산권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는 세계인권선언 채택에서 기권했다.¹⁸⁾ 이러한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의 입장의 차이로 인해, 국제인권조약은 결국 1966년에 자유권조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B규약)과 사회권조약(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A규약)으로 구분되어 채택되었다. 또한 자유권조약에서도 사유재산권 조항이 삭제되었다.¹⁹⁾

자유권이 국가권력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초점을 두는 데 반해(소유권 절대), 사회권은 국가권력이 사인관계에 개입해 사권을 제약하거나(소유권 제한, 노동권) 직접 사인에게 급부를 제공 사회보장권 하기를 요청하는 데 초점을 둔다. 후자의 경우는 시민(주로 소유권을 가진 시민)에 대한 조세부과라는 점에서 또한 사인관계에 개입하는 것(소유권 제한)이다. 이와 같이 국가권력이 사인관계에 개입한다고 하는 현대민법이나 사회법의 원리가 정당화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근대민법이 전제하고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대등성은 실제로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등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권의 개입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이는 또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에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권리가 바로 사회권이다.

16) “소유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해야 한다(153조).”

17) 張明奉, 「北韓憲法上 生存權의 基本權에 관한 考察」, 『北韓研究』 21 頁(1995), 266 쪽

18) 세계인권선언은 신체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권조항(제3조21조)과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일정기간의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는 사회권조항(제22조-28조)으로 이루어져 있다

19) 국제인권조약은 1976년에 발효되었는데, 북한은 1981년에, 남한은 1990년에 두 조약을 각각 비준했다.

3. 시민권이론의 재구성

나는 마샬의 시민권이론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고자 한다. 생활자료를 취득하는 권리로써 자유권에서 소유권과 가족권, 사회권에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들 수 있다. 시민으로서의 인간은 이 네 가지 권리를 통해 생활자료를 취득해 생존할 수 있다. 각 권리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생활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① 소유권 소유자는 소유하는 재산의 이용·수익·처분을 통해 생활자료를 취득한다. ② 소유권 소유자의 가족은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써의 가족권(부양권, 증여·상속권)을 통해 생활자료를 취득한다. ③ 노동권 소유자는 소유권 소유자에게 고용되어 취득한 임금으로 생활자료를 취득한다.²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자료 취득은 최저임금제에 의해 보장된다. ④ 노동권 소유자의 가족은 노동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써의 가족권(가족임금제)을 통해 생활자료를 취득한다. ⑤ 사회보장권 소유자는 국가의 급부로 생활자료를 취득한다. 사회보장권은 가족권에 대해 잔여적인 권리로써 가족권을 파생시키지 못한다.

소유권과 노동권·사회보장권은 상반되는 권리이다. 소유권과 노동권은 노사관계에서, 그리고 소유권과 사회보장권은 조세·재정관계에서 상반되는 위치에 있다. 사회보장권과의 관계는 사회보장권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다. 노동권이 없는 자 또는 노동권에서 파생되는 가족권이 없는 자에 대한 사회보장권(선별적인 사회보장권)과 노동권과의 관계는 상반되는 권리인 반면에, 노동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보장권과 노동권과의 관계는 동일한 권리이다.²¹⁾ 노동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보장권은 사실상 ‘사회적 임금’이다.

민법에서는 소유권만 인정한다. 노동권은 노동력의 소유권으로서만 인정된다. 민법에서의 행위 주체인 인(person)은 소유권을 가진 자이다.²²⁾ 소유권이 없으면 영리적인 사법관계(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노동력 소유자는 노동권 소유

20) ①과 ③ 사이에는 소유권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노동에 종사하고 그 수익으로 생활자료를 취득하는 자영업자가 있다.

21) 소유권·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의 관계는 사회보장 부담자(담세자와 사회보험 각출자)와 사회보장 수혜자(사회급부 수급자)의 관계로 나타난다.

22) 민법상의 행위주체인 권리자(person)과 행위무능력자(non-person)에 관해서는 Lisa McIntyre, *Law in the Sociological Enterprise: A Reconstruction* (Boulder: Westview, 1994) 참조할 것

자가 아니다. 노동력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면 노동권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는 소유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소유권은 여러 형태로 존재해 위험이 분산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생산수단 등 소유자에 비해 노동력 소유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은 종속노동이 된다. 이러한 권리의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노동법이 개입해, 민법상의 근로계약을 노동법상의 단체교섭이 대신하게 된다.²³⁾

사유재산제와 시장이 중심을 이루는 사회에서 완전고용을 보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노동권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권리, 곧 사회보장권이 부여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 사회권이 등장한 것은 소유권(사유재산제)과 시장만으로는 사회정의에 위배되고, 사회통합을 해치기 때문에 사회정책이 개입한 결과이다. 법률상으로는 각 권리관계는 상반되지만 현실적인 권리관계(사회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동태적인 관계로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의 부여로 인해 소유권이 없는 자는 무권리자가 아니라 권리자, 곧 시민이 됨으로써, 사회에 통합될 수 있다.²⁴⁾

III. 소유

1. 법률상의 소유권

1) 기본권으로서의 소유권

남한헌법에서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된다(제23조 제1항). 남한헌법도 현대헌법의

23)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고, 단체교섭의 수단은 파업 등 단체행동이다. 또한 상법상의 약관제도와 유사하게 최저근로기준을 정해 놓았다.

24) 마샬의 시민권이론을 재구성한 계급이론을 권리관계적 계급이론이라고 하자. 이 이론은 맑스의 생산관계적 계급이론과 비교해, 소유권 유무뿐만 아니라 가족권과 사회권(노동권과 사회보장권) 유무를 계급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용하다. 첫째, 생산관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계급위치를 정할 수 있다. 둘째, 국가의 사회정책을 계급이론에서 중요한 설명변수로 삼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권리관계적 계급이론은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계급관계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 셋째, 계급이론과 사회통합이론을 통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계급과 권리의 관계가 아니라 권리간의 배분관계로서 계급을 설명할 수 있으며, 계급갈등뿐만 아니라 계급타협, 계급분열뿐만 아니라 계급통합 곧 사회통합을 설명할 수 있다.

추세에 맞추어서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규정하고(제23조 제3항),²⁵⁾ 이와 관련해 경제의 장(제9장)에서 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²⁶⁾ 헌법에서의 재산권보장 규정은 사유재산제 보장으로, 나아가 원칙적인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보장으로 해석된다.²⁷⁾

북한헌법에서는 사유재산권이 부정된다(제24 조). 생산수단의 소유 주체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제한되고(제20 조),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 목적을 위한 소유로 제한된다(제24조 제1항).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만이 신성불가침이다(제84조 제2항).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고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철도·항공·운수·통신기관과 주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하고 국가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제21 조). 사회협동단체는 토지·농기계·배·중소공장과 기업소 등을 소유할 수 있다(제22조 제2항). 개인소유의 원천은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 그리고 텃밭 경영을 비롯한 개인부업경영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다(제24조 제2항).²⁸⁾ 개인소유는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된다(제24조 제4항).

2) 민법상의 소유권

북한민법에서의 소유권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남한민법과 다르다. 첫째, 앞서 헌법에서도 확인했듯이, 북한에서는 소유권의 주체에 따라서 소유권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 국가소유권과 협동단체소유권이 개인소유권보다 우월하고, 국가소유

25) 바이마르헌법 이래의 현대헌법에서는 재산권은 그 밖의 자유권과는 달리 前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연권에서 실정권으로 격하시켰다. 權寧星, 『憲法學原論』(법문사, 1995), 480 쪽

26) 특히 국토에 대한 제한과 의무부과 규정(제122조)은 토지공개념 3법의 입법근거가 되었다.

27)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산권보장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주관적 공권성은 의미와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객관적 가치질서성)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鄭克元,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기본구조와 본질적 내용」, 『公法研究』, 27권 2호(1999), 339 쪽

28) 1992년 헌법과 비교하면 현행 헌법에서는 국가소유의 대상이 축소된 데 반해 사회협동단체와 개인의 소유대상이 확대되었다. 張明奉, 앞의 논문, 94~97쪽. 개인소유에 대해 살펴보면, 주체가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확대하고, 텃밭 경영을 협동농장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 밖의 합법적인 경영활동(농민시장이나 물물교환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는 이득)을 추가하고 지적 재산권에 특허권을 추가했다(제74 조).

권이 협동단체소유권보다 우월하다. 국가소유권이 협동단체소유권보다 우월한 것은 협동단체소유권의 경우는 협동단체간의 소유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사회적 소유의 낮은 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소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협동단체소유를 국가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헌법 제23 조). 민법이론에서는 협동단체소유권은 국가의 지도 밑에 그 고유의 의사에 따라 그 본래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권리에 제한된다고 하고 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소유권의 행사는 권리능력을 벗어난 행위가 되어 무효가 된다고 한다.²⁹⁾

둘째, 앞서 헌법에서도 확인했듯이, 소유물의 성질에 따라서 소유권의 주체가 제한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와 소비재에 대한 소유를 구분하고, 양자를 구분하는 데 대해 북한 민법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은 점유권·이용권·처분권 외에 경제적 이득에 대한 취득권을 포괄해 착취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재에 대한 소유권은 점유권·이용권·처분권만으로 구성되어 착취의 수단이 될 수 없다.³⁰⁾ 따라서 사적인 착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서는 사적 소유권 대신에 개인적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북한민법에서는 개인소유 대상을 공민이 샀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로 생겨난 재산으로 규정하고(58조),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으며(제 59조),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적 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이용·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60조).

헌법상으로는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 규정되어 있지만(제21조 제1항), 협동단체소유의 소유권자인 협동단체원이 다시 국가소유의 소유권자인 인민으로 이중적으로 귀속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협동단체원 곧 농민과 노동자·사무원 간에는 국가소유의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파생하는 국가의 보장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북한헌법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해...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해 준다

29) 朴井源, 『北韓法律用語의 分析(III)-民事法 編』(한국법제연구원 1997), 90 ~91 쪽

30) 박인덕,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의 고수와 발전의 본질적내용」, 『경제연구』, 1993년 3호, 27, 29 쪽

(제28조 제1항)”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사회통합의 경제적 기초를 공유제, 특히 국가소유제에서 찾으며, 경제적 소유권에 있어서의 차별은 국가소유권과 협동단체소유권에서의 차별, 곧 노동자·사무원과 농민의 차별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2. 소유권계급

남한헌법과는 달리 북한헌법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제6조)”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트의 계급 이론을 적용하면,³¹⁾ 북한은 생산수단(자본재) 소유계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관료제에서의 직위(조직재)와 기술(기술재) 소유계급이 존재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이다. 곧 북한에는 경제적 소유권보다는 정치적 소유권에 의해 계급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소유권은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도가 아니라 국가(당)에 대한 접근도이다.

정치적 소유권을 가진 정치적 소유계급을 흔히 ‘간부’라고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2계급 1계층’이라고 해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 그리고 인텔리 계층(북한에서는 사무원 또는 근로인텔리라고 한다)으로 구분한다.³²⁾ 간부와 노동자는 직장배치에서 구분된다. 간부는 도·시·군 당(리당 포함) 간부부에서 하며 대상은 대학졸업자·국가사무원·노동자 중 승진한 자 등이다.³³⁾ 노동자는 각 도·시·군(리 포함)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일률적으로 배치한다.³⁴⁾ 직장배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은 정치적 기준이고 다음으로 실무적인 기준이다. 이 가운데 학력은 사회적 상승이동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진학과 정에서 본인의 성적만이 아니라 가족의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

북한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주민등록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해 1971년에 주민을 3계층(핵심계층, 기본계층, 적대계층) 51 부류로 분류하고 이를 당간부

31) E. O. Wright, *Classes*(London: Verso, 1985).

32) 북한의 간부에 대해서는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관계자료집』(1973), 750~773쪽 참조

33) 이병혁, 『사회구조와 생활실태』, 『북한개론』(을유문화사, 1992), 292~293쪽

34) 통일부정보분석국, 『2000 북한개요』(1999), 435쪽

상급학교진학, 군입대자선발에 주요한 근거로 사용했다³⁵⁾ 대학에서의 입시성적 평가기준은 성적, 출신성분, 사회단체생활에 대한 평점을 각각 동일한 비중으로 한다.³⁶⁾ 전면적인 무상교육제도에 의해 경제적 소유권의 학력에 대한 영향은 미약한 대신에 정치적 소유권의 학력에 대한 영향이 강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정치적 계층의 분류에서도 상대적으로 계급적 출신성분보다 개인의 사회적 성분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는 추세인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의 정치적 소유권에 의한 계층화도 귀속적 지위보다는 성취적 지위의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된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의 ‘붉은 기 쟁취운동’ 이후 과학기술분야의 인텔리 우대정책의 영향으로 교육이 계층화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과 정치가 배타적인 관계이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곧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이는 교육이 정치에 일방적으로 종속적이지 않았음을 뜻한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전체인구 대비 당원의 수가 가장 많은데 이는 인텔리를 널리 당원으로 흡수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원 중 인텔리의 비율을 확인할 수 없지만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가운데 인텔리가 차지하는 수에서 인텔리에 대한 정치적 우대를 확인할 수 있다.³⁷⁾

북한에서는 국가(공법관계), 시장(영리적 사법관계), 사회(비영리적 사법관계) 가운데서 시장과 사회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지위 곧 간부(당원) 지

35) 박재욱, 「북한의 계급」, 『북한의 사회』(을유문화사, 1990), 92쪽.

36) 金容基, 「階級の 不平等構造와 階級政策」,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경남대학교출판부 1990), 213쪽. 대학진학자는 제대군인이 약 70%, 직장재직자가 약 20%, 특수계층의 고등중학교 졸업자가 10% 정도를 점유했다. 국토통일원, 『북한의 대학·대학생활』(1985); 都興烈 「엘리트 형성과 순환」, 위의 책, 226쪽에서 재인용. 1980년부터는 정무원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당해연도 고등중학교졸업자 전원에게 대학입학 자격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고사의 합격 그 자체가 진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기관 또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 해당 대학의 본고사에 합격해야 한다. 위의 논문, 226쪽.

37) 朴吉聲, 「北韓社會와 農民」, 『북한연구』, 3권 2호(1992), 166쪽.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가운데 인텔리의 수는 1972년 제5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22.6%이던 것이 1977년 제6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46.2%로 급증했다. 1986년 제8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가운데 인텔리의 비율은 51.6%에 이른다. 1987년 전체인구 대비 사무원의 수가 16.8%인 것을 고려하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서 인텔리가 과대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에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가운데 인텔리의 비율이 64%로 증가했다. 김병로, 「사회·문화」, 『북한이해의 길라잡이 전환기의 북한사회』(박영사 1999), 307쪽.

위의 중요성이 남한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남한에서는 국가가 시장과 사회의 영역에 침투하기가 어려워서 정치적 소유권은 경제적 소유권에 비해 그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자원배분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경제적 배분) 국가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행정적 배분) 시민권으로서의 자유권과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인민의 권리는 국가의 권력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정치적 소유권이 경제적 소유권, 사회적 소유권, 문화적 소유권보다 더 우위를 차지한다.

북한의 정치적 소유권에 의한 경제적 차별은 남한의 경제적 소유권에 의한 경제적 차별과 비교해 크지 않다.³⁸⁾ 그러나 정치적 소유권에 의한 차별에서는 부족의 경제로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식량배급, 주택배정 등 소위 '추가적 혜택', 곧 사회보장 부분에서의 차별을 더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적 소유권은 평등권을 위배한 것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정치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가치는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농민이 창출하는 것인데, 비생산적 영역에 종사하는 간부(사무원)가 더 많은 소비재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서는 사무원(학생을 포함해)의 경우에는 연간 생산적 노동에 얼마간 종사하게 한다.³⁹⁾ 간부를 노동자·농민(또는 노동자·농민 자녀)에서 충원하거나 기술자를 우대하는 것도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정치적 소유권은 노동권에서 파생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고,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경제적 소유권에 대한 보장(재산권보장)이나 봉건제국가에서의 사회적 소유권에 대한 보장(신분보장)과 같은 법률적인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 소유권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
- 38) 1992년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서 발표한 생활비 평균인상율을 반영한 각 직종별 소득수준에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당·정기관 근로인텔리에 속하는 당부장·내각상은 430-500 원 내각부상·도인민위원장은 360-430원, 도인민위원회부위원장·군인민위원장은 240-290원, 사무원은 85-100원이다. ②공장·기업소 근로인텔리에 속하는 특급기업소(종업원 5천명 이상) 지배인은 360-430원, 1-2급 기업소 지배인·기사장은 220-290원이다. ③노동자에 속하는 광부·제철·제련공은 130-140원, 일반기계공·운전기사는 110-115 원, 일반노동자는 100-115 원이다 ④농민에 속하는 협동농장원은 250-280원이다(농민 가운데는 국영농장·목장의 농민도 있다. ⑤교육·문화인텔리, 서비스업 사무원에 속하는 대학교수는 250-300원, 의사(1급의료원)는 250원, 일반교원은 90-120원, 여관·식당·이발소·상점 등의 편의봉사원은 70-115 원이다 위의 논문 308 쪽
- 39) 사무원의 연간 의무노력 동원일은 40-50일, 고등중학생은 10 주간 대학생은 12 주간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거의 농촌지원과 도시미화작업에 참가한다. 李恒九, 「北傀治下에서의 勞動生活實態」, 『月刊 北韓』, 1978년 11월호, 242쪽.

IV. 고용

1. 법률상의 노동권

1) 기본권으로서의 노동권⁴⁰⁾

남한헌법에서는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된 정치적 프로그램 규정으로서 구체적인 권리로 보기가 어렵다. 남한헌법에서는 취업권과 관련해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를 규정하지만,⁴¹⁾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지급 청구권은 보장되지 않는다.⁴²⁾ 남한헌법에서는 노동권에 대한 수단적인 권리로서 국가의 의무와 최저임금수령권, 근로의 의무,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근로관계에서의 여성의 차별금지,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유가족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보장(제32 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6조), 노동3권(제3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헌법에서는 노동권은 구체적인 권리로서,⁴³⁾ 이를 위한 수단적 권리로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취업과 노동조건의 보장, 사회주의적 분배권(제70조), 휴식권(제71조), 8시간노동제(제30조),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특별보호(제77조),⁴⁴⁾ 혁명투사·혁명열사가족·애국열사가족·인민군후방가족·영예군인에 대한 특별보호(제76조), 노동의 의무(제8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시장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사실상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40) 사회권조약에서는 노동권과 관련해 노동의 권리(제6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향유권(제7조), 노동기본권(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41) 이와 관련되는 법률로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기본법 등이 있다.

42)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모든 독일국민에게는 경제적 노동에 의해 생활자료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적정한 근로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한다(제163조 제2항)”고 규정했다. 權寧星, 앞의 책 580쪽

43) “노동에 대한 권리는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지니는 첫째가는 권리이다” 석두관 「사회적소유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 『경제연구』, 1997년 4호, 12쪽.

44)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산원·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해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남한헌법에서는 노동자에게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3권을 부여해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주체인 노동조합에 권리를 부여하는 반면에 북한헌법에서는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이는 남한에서는 취업권 고용권이 불완전한 권리인 반면에 북한에서는 취업권이 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인 것과 관련이 있다. 남한에서는 노동자의 취업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노동3권을 더해야만 고용주와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노동자의 취업권이 완전하기 때문에 “공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제83조)”와 같은 노동자의 의무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한헌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제32조 제3항)”고 해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는 근로기준법상의 제 권리로 보장되고 있으며 이들 개별적 제권리가 하나의 기본권개념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⁴⁵⁾ 반면에 북한헌법에서의 노동권은 사실상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본질적으로 국가 내적인 보장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그 중점이 옮겨지게 되었고, 특히 그들의 권리 중에서 노동을 생존과 사회발전의 기초로 보는 관점에 의해 노동의 권리를 원초적 권리로 보고 있다.”⁴⁶⁾

2) 노동법상의 노동권

고용을 보면 남한노동법에서는 최저취업연령이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되었다.⁴⁷⁾ 이는 의무교육 연한이 중학교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북한노동법은 만16세 미만의 소년노동을 금지하고 있다(제15조, 헌법 제30조). 해고(고용안정)를 보면 남한노동법에서는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45) 이영희, 『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제』(서울: 까치, 1990), 17쪽.

46) 張明奉, 『北韓의 1998年 社會主義憲法 改正의 背景·內容·評價』, 『公法研究』 27 권 2 호(1999), 267쪽에서 재인용

47) 근로기준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제10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저연령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동복지법에서는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꼭예를 시키는 행위(제18조 제3호)와 주점 기타接客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동조 제4호)를 금지하고 있으며 범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제34조 제4호).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정당한 이유에는 징계해고 외에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은 민법상 고용관계의 해지와 다르다.

북한노동법에서는 해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징계해고의 경우에 노동형법이 적용된다. 남한에서는 노동자는 해고 후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으로 전직할 수 있지만 북한은 재취업이나 전직이 어렵다. 대신에 고용안정이 확보되고 또한 고용안정에 대한 하나의 대항 규정으로서 노동형법을 두는 것으로 이해된다.

남북한노동법에서는 연소자에 대한 보호규정과 함께 여성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남한노동법에서의 여성보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월 1회의 유급생리휴가(제71조), 임신중의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산전산후 유급보호휴가(제72조 제1항. 90일간으로 확대), 산전산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제한(제30조 제2항), 시간외 근로 금지(제72조 제2항),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제50조 제3항),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로 전환(제72조 제2항),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 부여(제73조), 연장근로의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제한(제69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원칙적 금지(제68조), 도덕상·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의 취업금지(제62조), 갱내근로 금지(제69조) 등이 있다.⁴⁸⁾

북한노동법에서는 여성보호규정으로 힘들고 유해한 노동 금지, 유아를 가졌거나 임신한 경우 야간노동 금지(제59조), 산전35일·산후42일의 산전산후휴가 부여(제66조. 150일간으로 확대),⁴⁹⁾ 탁아소·유치원·아동병동·편의시설 등을 통해 여성의 취업을 위한 조건 보장(제31조) 등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노동조건이 국가에 의해 결정되고(노동조건도 국가계획에 포함된다) 국가와 노동자 사이의 이해의 충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국가에 대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인

48) 또한 남녘고용평등법에서는 1년간의 육아휴직제도(제1조), 성희롱으로부터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모집채용에서의 여성차별금지(제6조),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제8조의 2) 등을 두고 있다.

49) 협동농장에서의 연간 의무노동일은 남자는 230일, 여자는 180일, 임신부와 유아(만 1세 미만)를 가진 여성은 130일이다. 李恒九 「北韓의 協同農場」, 『月刊 北韓』, 1981년 5월호, 253쪽.

정하지 않는다. 북한노동자의 지위는 노동 권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는 남한의 공무원이나(헌법 제33조 제2항) 단행동권이 제한되는 주요공익사업체의 노동자(동조 제3항)의 지위와 유사하다.

2. 노동권계급

노동권은 역사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대항권리로 등장했다. 곧 노동력시장에서 고용주인 자본가에 비해 지위가 낮은 피고용자인 노동자에게 평등한 당사자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로 부가된 권리이다. 따라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노동권도 축소되어 나타난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노동자는 피고용자인 동시에 주인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노동권은 고용과 관련된 취업권, 단결권과 노동조건 확보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제한되지만 취업권이 보장되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보장된다. 북한노동법에서는 “국가가 기술혁명을 추진해 중노동과 경노동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점차 줄여나간다(제7조)”라고 했다.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는 노동의 양, 농업노동과 공업노동,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는 노동의 질에 따른 분배의 차이를 낳는다. 북한에서는 대체로 농민보다는 노동자가 노동자보다는 사무원(근로인텔리)가 우대되고 있다.

북한의 노동자와 사무원은 대부분 공장·기업소에서, 농민은 협동농장에서 근무한다. 북한의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직제는 ‘지배인(공장당위원회)-부지배인 기사장-(각 부)-직장(직장장, 직공장, 기사, 직장초급당위원회)-작업반(3-5개, 당세포)-분조(3-5개, 당분조)’⁵⁰⁾ 및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협동농장관리위원회-부위원장(지원부문), 기사장(생산부문)-부기장(-창고원·부기원·재산관리원·노력일계산원·원가계산원), 각 지도원-작업반(평균 50-100명)-분조(10-20명)’⁵¹⁾으로 되어 있다. 기업소는 기사급까지, 그리고 협동농장은 지도원급까지가 간부에 속한다

1949년에 제정된 ‘노동자임금등급표’를 보면 임금등급을 8개 등급으로 구분하

50) 李恒九, 『北韓의 工場 企業所』, 『月刊 北韓』, 1981년 6월호, 242~243 쪽

51) 吳基完, 『北韓農業의 制度와 成長』, 『月刊 北韓』, 1972년 5월호, 124 쪽

는데, 임금계수는 1등급을 100%로 하고 8등급을 310%로 했다.⁵²⁾ 1966년에 시작된 작업반 독립채산제에서의 기능급수별로 책정한 1일 노력점수는 1급이 0.25점이고 8급이 2.5점이다.⁵³⁾ 등급제에서 다시 기술직을 우대해 학위와 근속연한에 따라 가급금을 준다.⁵⁴⁾ 협동농장농장원은 작업급수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가장 힘든 노동인 3급에 해당하는 작업정량을 완수했을 때 1.5노동일(또는 노동점수)로 계산한다.⁵⁵⁾

남한에서는 노동력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된다. 남한에서도 노동자간의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그 경향은 북한과 다르지 않다. 남한은 2000년 6월 현재 전체 노동자 가운데 임금 200만원 이상이 25.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6.0%,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7.4%, 30만원 미만이 0.1%이다.⁵⁶⁾

남한에서는 노동자이면서도 노동권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계층으로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의 노동자가 있다. 첫째,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이들은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에서 차별을 당하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도, 그리고 노동권에서 파생하는 사회보장권도 누리지 못한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하는 노동권의 하나인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바깥에 놓여 있다. 둘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이다. 이들에게도 노동3권은 법률상의 권리일 뿐이지 사실상의 권리가 아니다. 노동3권은 기본적으로 자유권으로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이다. 이들은 등록외국인노동자(산업연수생)와 미등록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내국인 노동자와 비교해 열등한 노동권을 향유한다. 후자는 노동권도 노동권에서 파생하는 사회보장권도, 노동권에서 파생하지 않는 사회보장권도 누리지 못한다. 이들은 무권리자, 곧 시민이 아니다

52) 극동문제연구소, 『北韓全書』, 中卷(1974), 157 쪽

53) 위의 책, 168 쪽

54) 위의 책, 166~169 쪽.

55) 1960년에는 작업반우대제, 1966년에는 분조도급제를 실시했다. 관료요원(관리위원회간부, 당·사회단체 간부)과 편의봉사원(이밭소, 탁아소, 유치원, 민주선전실, 진료소인원들)은 출근일수에 따라 농장원의 평균노력일에 150%를 가산한다. 작업반장은 생산노동에 직접 참가하면서 평균노동일을 기준으로 작업반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 수를 곱한다. 李恒九, 『北韓의 協同農場』, 254~255 쪽.

56)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2002).

V. 사회보장

1. 법률상의 사회보장권

1)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보장권⁵⁷⁾

남한헌법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제10조), 다시 이념적 사회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수단적 사회권으로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동조 제2항)를 규정하고, 개별적 수단적 권리로서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보호(법률유보), 재해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동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 그 밖의 사회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환경권(제35조), 보건권(제3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⁵⁸⁾

북한헌법에서는 이념적 사회권으로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해, 또는 국가의 기구와 지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제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는다(제22조)”고 규정하고, 수단적 사회권으로서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봄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의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제72조), 근로자의 물질적·문화적 생활권(제25조 제3항, 제53조), 16세미만의 아동노동 금지(제31조), 혁명투사·혁명열사가족·애국열사가족·인민군후방가족·영예군인에 대한 보호(제76조), 여성에 대한 보호(제77조), 교육권(제44조에서 제49조까지, 제73조), 환경권(제57조), 보건권(제56조, 제7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57) 사회권조약에서는 사회보장권과 관련해 사회보장(제9조), 가정·모성·어린이 보호(제10조), 기아로부터의 자유(제11조), 건강권(제12조), 교육권(제13조), 무상의무교육실시의무(제14조), 문화적 권리(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58) 환경권에는 주거권을 포함시키고 있다. 보건권에서는 모성보호 등을 규정하면서 ‘보호를 받는다. 노력한다’ 등으로 표현해 문맥상으로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권리로서 해석된다. 權寧星, 앞의 책, 613쪽.

2) 사회보장법상의 사회보장권

남북한의 사회보장권은 노동자 등 전체 국민에게 부과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권과 사회보장자에게 부과되는 선별적 사회보장권으로 구분된다. 보편적인 사회보장권에 대해서는 남한에서는 사회보험, 북한에서는 사회보험제에 의해, 선별적인 사회보장권에 대해서는 남한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 북한에서는 사회보장제에 의해 각각 보장한다(헌법 제72조). 북한은 관련 법률로서 사회보험법(1946), 국가사회보장에 관한 규정(1951), 노동법(1978), 인민보건법(1980) 등을 제정했다.

남북한의 사회보장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권과 보건권: 유아교육·교육과 관련해 남한에서는 영유아보육법(1991)을, 북한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법(1976)을 각각 제정했다. 의무교육제와 관련해, 남한에서는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⁵⁹⁾ 북한에서는 4세 미만의 유아를 맡아 키우는 탁아소를 설립하고 5세 유아는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받고(노동법 제71조) 15세까지 의무교육을 받고,⁶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한다(동법 제72조). 보건권과 관련해 남한은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제를 실시하고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헌법 제72조).⁶¹⁾

(2) 기타 보편적 사회보장권: 남한은 관련 법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의료보험법(1977), 국민연금법(1986), 고용보험법(1993) 등을 제정했다. 북한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보편적 사회보장권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사무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은 짚값으로 식량을 공급받는다(제70조). 노동재해·질병·부상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 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노동능력

59)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중등교육을 지칭한다

60) 1975년 최고인민회의결정인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집행 총화에 대해’에 의해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61) 노동자에 대해 무상치료제(노동법 제79조)를, 노동자의 부양가족에 대해 치료·요양·예방·해산 등에서의 무상의료봉사제를 실시한다(동법 제79조).

상실연금을 준다(제75 조). 노동재해·질병·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했을 때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에게 유가족연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운다(제77 조).

(3) 선별적 사회보장권: 남한에서는 공공부조법으로 생활보호법(1961)의 대체입법인 기초생활보장법(1999), 의료보호법(1977), 재해구호법(1962),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84) 등을,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아동복지법(1981; 아동복지법(1961) 개정), 노인복지법(1981), 장애인복지법(1989; 심신장애인복지법 [1981] 개정), 모자복지법(1989), 영유아보육법(1991), 유아교육진흥법(1983), 보호관찰법(1988), 윤락행위방지법(1961) 등을 제정했다. 북한노동법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선별적 사회보장권은 다음과 같다. 노동과 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했을 때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특별히 배려한다(제75 조).⁶²⁾ 국가는 노동능력을 잃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준다(제78 조).

북한은 사회보장권이 남한보다 일찍 법제화되었고 그 대상범위도 넓다. 북한은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정급여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느 정도의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권이 발달한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⁶³⁾

2. 사회보장권 계급

남북한의 사회보장권을 산업재해, 질병, 노령, 빈곤으로 나누어서 각각 적용 범위(coverage), 급여수준,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남북한 모두 사회보험에 의해 보장한다. 남한에서는 500인 이상 제조업·광업(1964)에서 실시한 후에 5인 이상 사업장(1990), 모든 사업장(2000)

62) 관련법령으로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승인에 대해(1956)가 있다.

63) 북한의 공식 보수수준을 남한의 소득수준과 비교하면 1988년에는 북한주민의 대부분(95-98%)가 남한주민 소득분포의 하위 7-50%에 속했던 것이 1998년에는 북한주민의 대부분(98-99%)가 남한주민 소득분포의 하위 10%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보수수준은 공식환율을 적용한 것인데 실제 환율을 적용하면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병로, 앞의 논문, 309쪽; 김병로, 「남북한 사회경제 발전모델 비교」, 『북한연구』, 1992년 봄호, 205쪽.

으로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고용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일용노동자는 제외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보험법 제정 당시부터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비용 부담은 남한은 사업주가, 북한은 기업소가 한다.⁶⁴⁾

(2) 질병: 남한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료보호법)에 의해, 북한에서는 사회보장제(무상치료제)에 의해 각각 보장한다. 남한은 500인 이상 사업장(1977),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1977), 16인 이상 사업장(1982), 5인 이상 사업장(1986), 농어촌지역 주민(1988), 도시·직종별 자영업자(1989)로 확대되고, 국민건강보험법(1999)으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었다. 직장가입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이다. 북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⁶⁵⁾

(3) 노령(장해, 사망): 남한은 공무원과 군인(1961), 사립학교교직원(1975)의 특수지역연금을 거쳐, 10인 이상 사업장(1988), 5인 이상 사업장(1991), 농어민(1995), 도시자영업자 및 5인 미만 사업장(1999)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연금은 1인 1연금이 아닌 1소득자 1연금으로 전업주부나 학생, 비정규직 노동자, 60세 이상의 노인, 납부예외자 중의 실직자나 휴·폐업자 등은 제외되어 있다. 북한은 국가사회보장법에서 연금규정을 마련했지만 실제 적용된 것은 노동법(1978) 제정 이후부터이다. 농민에게는 해당 협동농장에서 자체적인 보조금형식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협동농장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할 데 대해(1985)를 제정하면서 농민에게도 연금제도를 확대했다.⁶⁶⁾

양로연금 급여자격은 남한은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 이상, 북한은 직장근무경력 20년 이상, 남자 60세, 여자 55세이다(노동법 제74조). 급여수준은 남한은 최종보수의 40%, 북한은 기본생활비의 60-70%에 현물급여로 식량 400g을 지급한다.⁶⁷⁾ 남한은 연금가입에서 제외된 부양가족과 관련해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액을 지급하고, 결혼생활이 5년 이상으로 이혼한 경우는 분할연금수급권을 가진다

64) 북한노동법에서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사회보장제에 의해 곧 국가가 부담한다.

65) 관련법령으로 ‘무상치료제를 실시할 데 대해(1952)가 있다

66) 통일교육원, 『북한이해』(1997), 258 쪽

67) 사회보험법에서는 직장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이 되면 매월 25원의 현금과 1일 300그램의 식량을 배급하도록 되어 있다.

(1998), 68) 그리고 유족급여액으로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한다.⁶⁹⁾

비용부담은 남한은 사업장가입자는 피용자와 사용자가 분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농어민은 국가가 기여금의 일부를 보조한다. 북한에서는 보험료로 소득의 1%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한다

(4) 실업: 남북한 모두 사회보험에 의해 보장한다. 남한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30인 이상(1995), 10인 이상(1998. 1), 5인 이상(1998. 3), 모든 사업장(1998. 10)으로 확대되었다. 농업·임업·수렵업에서의 4인 이하 사업장, 총 공사금액이 노동부장관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이 제외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자영업자와 그 가족종사자가 제외되어 있다. 북한사회보험법에서는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직업을 얻지 못하고 생계가 극빈하고 부양자도 없는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남한고용보험법에서는 본인의 과실에 의한 해고와 자발적 이직의 경우(제45조), 북한사회보험법에서는 자발적 사직, 노동규율위반, 범죄 등 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5) 빈곤: 남한은 최저임금제가 최저임금법(1986) 시행령 개정(1990)으로 전 산업으로 확대되었지만 9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2조).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개인의 자활을 강조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생계급여 수여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제5항, 제30조 제2항). 남한에서는 저소득층의 영유아(영유아보육법), 요보호 아동(18세 미만)과 요보호임산부(아동복지법),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노인복지법), 장애인(장애인복지법),⁷⁰⁾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부양능

68) 가급연금액은 배우자는 15만원, 자녀와 부모는 10만원이다. 남편과 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자녀는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이다.

69) 유족의 범위도 배우자(남편),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60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참고로 일본, 독일의 경우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사망 당시 동거하며 부양했던 계자녀, 혼외자녀, 부양자녀, 부양부모, 부양조부모를 수급권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張東一, 『社會福祉法の 理解』(학문사, 1996), 205쪽.

70) 장애인의 범위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로 제한한다. 제23조. 일본의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장애인에 심장·신장 또는 호흡기의 기능장애를 포함시키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 이상 의무고용제를 규정하고

력이 없는 여성 및 미혼여성(사실혼관계의 여성 제외)이 18세 미만(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일정한 생활수준 이하의 저소득 모자세대가정(모자복지법), 임신부(모자보건법), 요보호여성(윤락행위 등 방지법), 전과자(보호관찰법, 갱생보호법, 소년법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선별적 사회보장 대상은 재해구호와 보훈급여 대상자, 무의탁노인(양로원에 수용한 경우는 300g 양곡 배급), 연로연금의 근속년수를 채우지 못한 노인(부양자인 자녀에게 500g의 식량만을 추가로 지급, 8세 미만의 고아 육아원과 애육원, 유자녀학원), 상이군인(영예군인학교, 영예군인병원, 영예군인정양소·휴양소) 등이다.

남한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권에서 파생하는 사회보장권에서 배제되어 있다. 북한에서 사회보장권은 2차적인 분배인 국가 또는 사회에 의한 추가적 혜택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소득과 비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어지므로 소득재분배에 유리하다.⁷¹⁾ 남북한의 보편적인 사회보장권은 노동권에서 파생하는 사회보장권과 관련되는 사회보험제 형식이어서, 노동권이 발달하지 못하고 노동권간의 차별이 큰 남한에서는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구의 비율이 넓고, 이로 인해 보편적인 사회보장권이 소득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⁷²⁾

VI. 가족

1. 법률상의 가족권

1) 기본권으로서의 가족권

남한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장(제36조 제1항), 모성보호(제66조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사유재산제도와 함께 제도적

있다.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신보건법(1995)을 제정했다. 위의 책, 370쪽.

71) 소득에 비례하는 추가적 혜택으로는 휴가수당 등이 있다. 그러나 배급제에서는 정치적 소유권에 의한 차별이 나타난다.

72)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박경숙, 『노년기 불평등의 미래』, 『한국사회학』, 35집 6호(2001).

보장의 예의 하나로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건국헌법에서도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제20조)”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권 이념은 가족법에서는 그대로 보장되지 못해, 1997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동성동본금혼(제809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현재 호주제가 법원에 의해 위헌제정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⁷³⁾

북한헌법에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제78조 제1항), 남녀동등, 모성과 아동 보호, 여성의 사회진출조건 보장 제7 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제도 및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제78조 제2항). 북한은 일찍이 전문과 9개 조문으로 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을 제정해 국가생활의 모든 영역, 참정권, 노동권·사회보험권·교육권에서의 남녀평등권(제1조-제3조), 자유결혼(제4조), 자유이혼(제5조 제1항), 모성으로서 아동양육비를 전남편에게 요구할 소송권(제5조 제2항), 동등의 재산 및 토지상속권과 이혼시 재산과 토지의 분배권(제8 조) 등을 규정하고, 29개 조문으로 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시행세칙을 제정함으로써 남녀평등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했다. 북한가족법에서는 부성추종 원칙 제26 조만 제외하면 대체로 헌법상의 가족권 이념이 실천되고 있다.

2) 가족법상의 가족권

남북한 가족법상의 가족권을 법정부부재산제, 부양의무와 상속권의 범위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정부부재산제: 남한에서는 별산제로 혼인 중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반면에(제80조 제1항), 북한에서는 종래에는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소유로 하는 공동소유제로 이해되어 왔으나(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시행세칙 제7조), 민법상의 가정재산 규정으로 가정성원 공동소유제

73) 헌법에서 규정한 결혼 외의 자녀의 결혼 중의 자녀와의 동등권(제23조 제2항)에 대해서는 상속에서는 동등이 대체로 실현되었다. 다만 호주제로 인해 결혼 외의 자녀의 호주상속권이 결혼 중의 자녀보다 후순위인 관계로, 호주인 아들보다 상속분이 적었다. 현행 가족법에서는 호주계승인의 상속상의 가산분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호주승계권에서의 차별은 남아 있다. 호주승계 순위는 결혼 중의 아들, 결혼 외의 아들, 결혼 중의 딸의 순서이다.

로 이해된다.⁷⁴⁾ 가정재산은 개별적 가정성원들이 그 형성에 공헌한 바에 따른 지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정의 유지와 가정성원들의 복리에 이용될 뿐이고 가정성원의 분리와 함께 분할된다.⁷⁵⁾

(2) 부양의무의 범위: 남한에서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이다(제974조). 다수설에 의하면 부부 사이의 부양과 미성숙자에 대한 부양은 제1차적 부양(생활유지적 부양)으로 보고, 친족 사이의 부양은 제2차적 부양(생활부조적 부양)으로 본다. 북한에서는 부양의무의 범위를 부부간의 부양(제19조),⁷⁶⁾ 친자간의 부양(제28조 제2항),⁷⁷⁾ 조부모손자녀간(제35조), 형제자매간(제36조), 기타 가정성원(제37조)으로 한다.⁷⁸⁾

남북한의 부양의무의 범위는 대체로 일치하나 남한가족법에서는 형제자매 사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부양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가족법과는 구별된다.⁷⁹⁾ 남북한가족법은 모두 친족 부양의무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 남한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계혈족간에는 부양의무를 지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지고, 북한은 가정성원 상호간에는 1차적인 부양의무를 지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

74) 더욱이 필자미상의 조선민주주의공화국가족법 참고자료(출판관계미상)에서는 “부부 각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개별재산에 대해서 점유·이용·처분권이 부여된다”고 한다. 法務部, 『北韓法の體系的考察(Ⅰ)-民事關係法』(1992), 371쪽

75) 개별재산은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가지고 왔거나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과 그 밖의 개인적 성격을 띠는 재산”이고, 가정재산은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번 재산”이다(제61조).

76)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대해 “노동능력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고 한 것은 이혼 후의 부양도 부부부양의 하나의 형태로 파악하면서 노동능력이 없는 배우자는 이혼 후에도 부양해야 한다는 소비에트법의 정신은 그대로 도입한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 法制處, 『北韓法制概要』(1991), 352쪽

77) 이혼할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 배우자의 부양료는 당사자들이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 안에서 재판소가 정한다(제23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녀는 노동연령(만16세)까지이다.

78) 기타 가정성원은 해석론에 의하면 3촌 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민사규정(1986)에서는 1순위 부양의무자로 가정성원, 2순위 부양의무자로 따로 살고 있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했다. 이는 러시아공화국이나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적 부양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法務部, 앞의 책, 437쪽.

79) 法制處, 앞의 책, 365쪽.

계혈족과 형제자매간에 부양의무를 진다.

(3) 상속순위: 남한에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 상속인이다. 북한에서는 배우자·자녀·부모가 1순위, (외)손자녀와 (외)조부모·형제자매가 2순위, 가까운 친척이 3순위 상속인이다.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가족법이 형제자매까지를 혈연상속인으로 규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상속인의 범위가 넓다.

남북한가족법에서의 상속 범위에서 가장 다른 점은 계친자관계와 양친자관계의 상이함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일 것이다.⁸⁰⁾ 북한가족법에서는 계친자관계와 양친자관계를 법정친자관계로 하고 그 효과를 혼생친자관계와 동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33조).⁸¹⁾ 남한가족법에서는 계친자관계는 인척관계로 계자녀는 친생부모에 대해만 상속권을 가지고 계친자간에는 2차적 부양의무만 질 뿐이다.⁸²⁾ 또한 양자녀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친생부모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가진다.

북한가족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언이 유언자의 부양을 받던 공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 유언을 무효라고 규정한 것은 유류분제도의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하겠다. 남한가족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혈연관계를 중시해 이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보호라는 생계보장적 관점에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⁸³⁾ 이러한 차이는 남북한가족법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가족법상 계친자관계와 양친자관계의 차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권계급

남북한의 가족은 모두 부양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북한은 가정재산

80) 위의 책, 372쪽.

81) 해석론에서는 계친자관계는 계친과 계자녀가 동일한 가족성원이 되어야 비로소 발생한다고 한다. 김정금, 『가족법』(김일성대학출판부, 1985), 63쪽, 法院行政處 『北韓의 家族法』(1998), 78 쪽에서 재인용.

82) 계친은 계자녀에 대해 감호권도 가지지 않는다.

83) 法務部, 앞의 책, 447쪽.

제를 통해 가족의 재산적 결합, 경제생활의 통합의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가족이 아무리 공동체라고 해도 부부의 특유재산(개별재산)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유권과 가족권은 분리된다.

남한은 가족재산 중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호주재산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는 등 호주제로 인한 남녀간의 차별이 철폐되었지만, 남편이 사회적 노동에 종사하고 아내가 가사노동에 종사하거나 부부가 모두 취업하는 경우에도 남편이 더 많은 수입을 거두고 아내가 더 많은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남편의 특유재산(소유권)이 아내의 특유재산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⁸⁴⁾ 북한은 노동법상의 모성 보호 조항,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등으로 남녀차별이 남한과 비교해 크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남녀차별이 남아있다. 북한에서도 가족의 계층은 세대주의 계층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를 잘 증언한다.⁸⁵⁾

남북한의 가족권을 소유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 노동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 사회보장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으로 구분해 각각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유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 남북한 민법상의 소유권 제도의 차이를 반영해 소유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은 남한이 북한보다 더 중요하다. 북한에서는 정치적 소유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이 있다. 대체로 소유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이 노동권을 우선한다.

(2) 노동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 북한은 개인임금제인 반면에, 남한은 대체로 가족임금제이므로 노동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은 남한이 북한보다 더 중요하다. 개인임금제와 가족임금제는 각각 사회보장권(사회보장의 개별원칙, 보편적 사회보장권)과 노동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사회보장의 세대원칙, 선별적 사회보장)과 결부된다. 북한에서는 미성년자와 노동능력이 없는 가족원에 대해만 부양하면 되고, 이 경우에도 사회보장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부양부담이 적다.⁸⁶⁾ 반면에 노동자의

84) 남한가족법에서도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제도(제839조의 2)와 상속개시시의 기여분제도(제1008조의2)의 신설을 통해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아들과 딸의 상속분이 동등하게 되었다.

85) 최현철, 「주민세대분류에서 나서는 몇가지 방법론적문제」, 『경제연구』, 1998년 1월호. 북한에서도 아들(특히 장남)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제오, 「우리 사회 인민들의 가족생활풍습에 대한 고찰」, 『김일성대학학보(역사·철학)』, 44권 3호(1998).

86) 북한가족법에서는 “부양자가 없는 미성년자와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가 돌보아준다 제8 조”

부양능력도 제한되어 있다. 남한은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 부양의 대상이 되고 사회보장권이 없기 때문에 부양 부담이 크다. 이는 가족임금제에 의해 뒷받침된다.

가족임금제는 여성을 가사노동에 전담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지위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⁸⁷⁾ 가족임금제 아래 여성은 사회적 노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사회적 노동에 종사하더라도 가계소득 보조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노동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 그리고 가족임금제 아래 저임노동자 가족은 노동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과 사회보장권 양자가 모두 불완전해 결국 불완전한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

(3) 사회보장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 선별적인 사회보장권 가운데서 일부는 가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입양가족, 수양가족, 미혼모가족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권의 대상이 빈민, 노동자에서 가족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회보장권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도 이러한 추세와 일치한다. 곧 위에서 열거한 선별적인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을 통해, 선별적인 사회보장권(입양아, 수양아, 미혼모자녀 등)을 보편적인 사회보장권(가족화)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북한에서는 가족법상 입양가족을 지지하지만(노동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 국가가 입양가족에 대해 지지를 하지는 않는다(사회보장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 남한에서는 아동복지법시행령(2000)에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다(제5조).⁸⁸⁾

남한에서는 소유권과 노동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권의 소유권과 노동권에 대한 중속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혼으로 가족권을 상실하는 여성이나 여성이 양육하는 자녀는 빈곤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유권(고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해 가족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보장권을 확대해야 하고, 노동권에서 파생하는 가족권의 경우에는 가족권에 대해 노동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 규정하고 있다.

87) 맑스는 노동자의 임금이 노동력 재생산비인 가족생계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이를 가족임금제라고 한다. 가족임금제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大澤眞理, 「‘家事労働はなぜタカ’を手がかりとして」, 『社會科學研究』, 45-3(1993) 참조할 것

88) 이동진, 「가족 이동과 가족 중첩」, 『현대사회와 인간 3: 진단과 대응의 사회학』(박영사, 2002).

사회보장권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권(고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권)에 대해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사회보장권의 시각에서 보면 가족부양의 잔여범주에 대한 사회보장으로서의 선별적 사회보장권뿐만 아니라 또한 가족을 부양하는 사회보장으로서의 보편적 사회보장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VII. 결론

뒤르케임이 강조했듯이 시장경제(분업)는 유기적 연대의 토대를 이루지만 또한 아노미(아노미적 분업)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계획경제는 기계적 연대의 토대를 이루지만 또한 강제(강제적 분업)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아노미를 방지하는, 또는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계획경제를 받아들여 강제를 방지하는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 바이마르헌법에서 경제질서로 제시한 ‘사회적 시장경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었다. 남한의 헌법은 건국헌법 이래로 경제의 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권 확대에 유리한 것이지만, 실제적인 경제질서에서는 사회권이 발전하지 못했다.

남한과 북한은 50여 년 동안 상반되는 방식으로 체제통합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상반되는 방식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남북한이 대결 상황에서 남한은 북한의 방식을, 북한은 남한의 방식을 기피했다. 남한에서 사회권은 사회주의로, 북한에서 자유권은 자본주의로 오인될 수 있었다. 남북한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반성의 구도를 깨고 남북한이 경쟁에서 협력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상호 체제의 장점을 수용해야 한다. 남북한은 과정은 다르지만 모두 사회통합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탈북자’ 현상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사회통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한은 IMF 경제위기 시기에 실업자가 처한 상황, 현재의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처한 상황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사회통합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체제통합에서는 남한이 북한과 비교해 월등히 성공했다. 따라서 남한은 내부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제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제를 동시에 떠맡아야 할

것이다(양자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남북한 사회통합을 남북한 각 사회의 사회통합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북한의 사회통합에서 배울 점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1946년에 대부분의 사회권을 법제화했다(남녀평등법령·노동법령·사회보험법 등). 이 체제가 현재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체계통합의 실패로, 비록 실제적인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못한다고 해도 하나의 제도 또는 이념으로서 사회권이 확고하게 보장된 점은 높이 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남북한의 사회통합의 통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소유권은 개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어서, 시장교환이 아니라 국가의 재분배(배급제)에 의한 자원배치는 경제적 효율이 떨어진다. 이 점에서 북한의 공유제는 문제가 있다. 북한은 사적 소유권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유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자랑해 온 바대로 교육과 의료와 같은 보편적인 사회보장권에서 북한이 우월한 것은 공교육과 공의료제도의 산물이다. 북한이 경제(시장) 영역에서 소유권을 확충할 필요가 있듯이, 남한은 사회(정책)영역에서 공유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권이 개인의 개성의 근간을 이루고 노동(직업)을 통해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완전고용 정책,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 노동과 연계되는 사회복지(workfare), 보편주의적 사회보장권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경우 국가가 노동자의 후견인적인 지위에서 벗어나서 노동자가 노동3권을 통해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 나서게 할 필요가 있다. 남한도 소유권과 노동권의 관계에서 노동권(단결권, 경영결정권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장경제에서 완전고용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동과 연계된 사회복지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동권이 없는 자에 대한 선별적인 사회복지도 필요하다. 남한에서는 사회보장권에 대해 오명효과를 줄이고 사회보장자에 대한 급여(실업자·장애인·모자가정·아동·노인·빈민 등에 대한 생계 수당)를 늘려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선별적인 사회보장권을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의 사회보장부담을 가족의 부양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족복지가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에게 지나친 부양부담을 지우는 것은 가족주의 또는 가족해체라는 양극적인 병폐를 낳을 수 있다. 사회보장의 대상이 빈민이나 노동자에서 가족으로 확대되어 사회보장이 사후적인 대책이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북한은 모두 출생률과 사망률의 저하와 핵가족화에 의해 부양부담률이 높다. 그리고 결혼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가족 부양이 힘겨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권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가족권의 확대가 사회권의 축소로 나타나서는 안될 것이다. 가족권과 사회권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입양·수양 가족, 미혼모 가족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극동문제연구소, 『北韓全書』, 中卷 1967.
- 權寧星, 『憲法學原論』, 법문사, 1995.
- 김귀옥·김정훈, 「남북교류의 확대와 통일의 전망」, 전성우 편, 『남북한 사회통합의 길』, 금왕 2001.
- 김병로, 「남북한 사회경제 발전모델 비교」, 『북한연구』, 1992년 봄호
- 김병로, 「사회·문화」, 김성철 외, 『북한이해의 길라잡이 전환기의 북한사회』, 박영사 1999.
- 金容基, 「階級の 不平等構造와 階級政策」, 고현욱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 김정금, 『가족법』,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2.
- 大澤眞理, 「‘家事労働はなぜタダか’を手がかりとして」, 『社會科學研究』, 45-3(1993).
- 都興烈, 「엘리트 형성과 순환」, 고현욱,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 리제오, 「우리 사회 인민들의 가족생활풍습에 대한 고찰」, 『김일성대학학보 역사·철학』, 44-3(1998).
- 박경숙, 「노년기 불평등의 미래」, 『한국사회학』, 35집 6호(2001).
- 朴吉聲, 「北韓社會와 農民」, 『북한연구』, 3권2호(1992).
- 박인덕,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의 고수와 발전의 본질적내용」, 『경제연구』, 1997년3호

- 朴井源, 『北韓法律用語의 分析(III)-民事法 編』, 한국법제연구원, 1997.
- 法務部, 『北韓法研究(IV)-民法』, 1987.
- 法務部, 『北韓法研究(VI)-勞動法』, 1987.
- 法務部,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I)-民事關係法』, 1992.
- 法務部,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III)-商事・經濟・勞動關係法』, 1997.
- 法制處, 『北韓法制概要』, 1991.
- 석두관, 「사회적소유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 『경제연구』, 1997년 4호
- 성경룡,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한국정치학회 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1993.
- 吳基完, 「北韓農業의 制度와 成長」, 『月刊 北韓』, 1972년 5월호.
- 윤여령,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과제: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통일문제연구』, 10권 2호 (1998).
-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과 재외동포의 역할」, 『統一問題研究』, 2000년 상반기호.
-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 모델의 새로운 모색」, 『아세아문제연구』, 44-1(2001).
- 이병혁, 「사회구조와 생활실태, 최명 책임편집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2.
- 이영희, 『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까치, 1990.
- 이은죽, 「남북한 사회통합의 이론적 탐색, 이은죽 외. 『남북한 사회통합론』, 삶과 꿈, 1997.
- 李恒九, 「北傀治下에서의 勞動生活實態」, 『月刊 北韓』, 1978년 11월호.
- 李恒九, 「北韓의 協同農場」, 『月刊 北韓』, 1981년 5월호.
- 李恒九, 「北韓의 工場 企業所」, 『月刊 北韓』, 1981년 6월호.
- 장경섭, 「통일한민족 국가의 사회통합: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준비된 통일」, 박기덕·이중석 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 1995.
- 張東一, 『社會福祉法の 理解』, 학문사, 1996.
- 張明奉, 「北韓憲法上 生存權의 基本權에 관한 考察」, 『北韓研究』, 21 호(1995).
- 張明奉, 「北韓의 1998年 社會主義憲法 改正의 背景·內容·評價」, 『公法研究』, 27-2(1999).
- 전상인, 「통일과 남북한의 사회통합」, 『통일문제연구』, 8-1(1994).
- 전성우,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독일통일 3년」, 『통일문제연구』, 5-4(1993).
- 전성우, 「통일 독일의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비교사회론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전태국, 「남북통일과정에서의 사회통합의 문제」, 『한국사회학평론』, 6(2001).
- 鄭克元,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기본구조와 본질적 내용」, 『公法研究』, 27-2(1999).
- 최현철, 「주민세대분류에서 나서는 몇가지 방법론적문제」, 『경제연구』, 1998년 1호.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1997.

통일부정보분석국, 『2000 북한개요』, 1999.

Giddens, A.,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1984.

Harbermas, J.,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London: Polity Press, 1987.

Lockwood, David,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G. K. Zilleschan and W. Hirsh(eds.), *Explorations in Social Change*, London: Routledge, 1964.

Marshall, T. H.,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Anchor Press, 1964.

McIntyre, Lisa J., *Law in the Sociological Enterprise: A Reconstruc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4.

Mouzelis, Nicos, "Social and system integration: some reflections on a fundamental distinc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No. 25(1974).

Wright, Erik Olin, *Classes*, London: Verso, 1985.

주요어

사회통합, 체계통합, 시민권, 소유권, 사회권, 노동권, 가족권